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5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임종국, 김원태, 민병주,
박승진, 박칠성, 오금란,
이상욱, 이소라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전병주, 정준호, 최재란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민간 소규모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좋은빛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-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빛환경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함(안 별표).
- 나.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함(안 별표).
- 다.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심의하되, 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하도록 함(안 별표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(제22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규 모
1. 건축물	공공기관 ¹⁾ 에서 건설하는 건축물
	연면적 10,000㎡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(민간)
	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
2. 공동주택	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
	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민간)
3. 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
4. 공간조명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(개량 제외)
5.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(신설, 개량 등)
	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서면심의(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)

1) “공공기관”이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2조(조명계획의 수립 등)제2항 별표의 내용을 수정하여, 미디어파사드 콘텐츠에 대한 대면심의 규정을 추가하고, 민간 소규모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좋은빛위원회(이하 위원회) 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(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→ 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)하고,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과 공공주택을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(공공청사 →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)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빛환경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